

보도시점 2025. 9. 24.(수) 12:00 / 배포 2025. 9. 24.(수) 08:30
< 9. 25.(목) 조간 >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위약금, 감염 책임 제한, 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업체별 시정 내역은 <붙임 2> 참조)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33개사)
-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37개사)
-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7개사)
- 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 실시 조항 (25개사)
- ⑤ 휴대폰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조항 (36개사)

< 조사 배경 및 경과 >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이용률: 75.1%(2018년) → 81.2%(2021년) → 85.5%(2024년) (보건복지부)

** 선호도: 75.9%(2018년) → 78.1%(2021년) → 70.9%(2024년) (보건복지부)

*** 불만상담: 총 1,440건(2021.~2025.6.) (한국소비자원)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하였다.

* (참고)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산후조리원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7월)**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음. 이에 **업계는 약관 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정에 협조.

< 주요 시정 내용 >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불공정약관 예시 >

(이용자 귀책)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의 기본을 6박7일로 하며,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산후조리원 귀책)

-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인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 본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함으로써,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였다.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 불공정약관 예시 >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감염성, 전염성 질환의 발생 시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판단 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불공정약관 예시 >

- 본 조리원과 관련된 글을 특정의도로 카페 등 SNS에 글을 공유하지 않는다.
-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점,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④~⑤ 그 외 불공정한 약관 조항]

그 밖에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산모의 휴대폰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 불공정약관 예시 >

- 분만 후 입실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병원 병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 입실기간 중 **본원에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 **책임은 산모(보호자)에게 있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겪어온 환불 제한 등 불편 사항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소통하고,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약관을 시정하였다.

금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붙임 2>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붙임 3>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예시)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책임자	과 장	김하리 (044-200-4483)
		담당자	조사관	김자현 (044-200-4489)

1

조사 배경 및 경과

-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산후조리원)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자

- (현황) 산후조리원은 2016년 612개소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저출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460개소 수준이나 전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이용률: 75.1%(2018년) → 81.2%(2021년) → 85.5%(2024년) (보건복지부)

- (분쟁사례) 산모들의 다양한 불만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택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 (불만상담) 총 1,440건(2021.~2025.6.), (주요사례) ①계약해제·해지 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 ②계약 불이행 등 (한국소비자원)

** 선호도: 75.9%(2018년) → 78.1%(2021년) → 70.9%(2024년)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소비자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였다.

-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 업계와의 간담회(7월)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 소비자 불만사태 및 약관 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이에 산후조리원 업계도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정위의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였다.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33개사)

- (시정 전) 산후조리원들은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금 환불 기준일과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의 기본을 6박7일로 하며,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 ☞ 계약 해제·해지 시에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4항).
- ☞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일반적으로 출산 6~7개월 전에 체결되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이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 ☞ 인기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체 고객 확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 부과 또는 환불 금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약관법 제8조).

- (시정 전) 또한, 사업자 귀책 시에는 일반적인 해약금 약정보다 낮은 배상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인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 본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한다.

- ☞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행 착수 전까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65조).

☞ 산후조리원이 출산 임박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급히 대체 시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보다 제한하는 조항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사업자에게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약관법 제9조 제5호).

- (시정 후)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하였다.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37개사)

- (시정 전)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감염성, 전염성 질환의 발생 시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판단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 최근 산후조리원 감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중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 위생관리나 방역 이행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로 입증 부담이 매우 크고, 실제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약관법 제7조 제2호).

- (시정 후)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7개사)

- (시정 전)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부정적 이용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본 조리원과 관련된 글을 특정의도로 카페 등 SNS에 글을 공유하지 않는다.
○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이용하는 고위험·고관여 서비스로, 소비자 후기는 선택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위생·감염관리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 소비자는 사실에 근거한 후기를 작성할 자유가 있는데, 후기 작성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침해될 우려가 있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부정적 후기 작성 제한 및 이러한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 실시 조항(25개사)

- (시정 전) 입소 예정일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대체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를 정식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대체 병실과 산후조리원 간 요금 차이에 대한 정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 규정 등이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분만 후 입실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병원 병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이 해당 일수의 병실료를 지급하되 지급하는 병실료의 1일 한도는 40만원입니다(병실료 지급 시 입실 후 해당 일수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에서 차감하되, 차감된 일수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음).

☞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급부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상이한 경우에는 비용이 소액인 경우라도 정산 절차를 거쳐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산예정일 변동 시 예약한 입원실이 아닌 대체 병실을 사용하여 이용 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 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⑤ 휴대폰 멸실사고 등 사업자 면책조항(36개사)

□ (시정 전) 산후조리원 내에서 산모의 휴대폰이 분실·훼손·도난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입실기간 중 본원에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시 <u>책임은 산모(보호자)에게 있다.</u>
○ 산후조리원 내에서 일어난 분실 및 도난 사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객실을 비우는 경우 문을 꼭 잠가주시고 귀중품 및 현금을 객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52조).

☞ 따라서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음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관련 법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약관법 제7조 제1호).

□ (시정 후)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휴대폰이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붙임 2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연번	사업자명	지역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출산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 실시 조항	휴대품 멸실사고 등 사업자 면책조항
1	아인산후조리원	인천	○			○	○
2	곽생로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경기		○	○		○
3	마티네차움 산후조리원	경기	○	○			
4	올리비움산후조리원	서울	○	○		○	
5	빛고을산후조리원	광주	○	○		○	○
6	퀸스산후조리원	충남	○	○		○	○
7	삼성미즈산후조리원	충남	○				
8	W(더블유)산후조리원	인천	○		○		○
9	위대 한탄생 산후조리원	부산	○	○	○	○	○
10	미즈제일산후조리원	대전		○		○	○
11	서울여성 산후조리원	경기	○	○			○
12	청라 산후조리원	인천	○	○		○	○
13	햇빛병원부설 햇빛산후조리원	서울		○	○	○	
14	청화 산후조리원	서울					○
15	에덴병원 산후조리원	광주	○			○	○
16	동탄제일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경기	○	○		○	○
17	미즈여성병원 부설산후조리원	대전		○	○	○	
18	순산후조리원	부산	○	○			○
19	쉬즈메디산후조리원	경기	○				
20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	대전		○			
21	The앙프로산후조리원	충남	○				○
22	좋은문화산후조리원	부산		○			○
23	미래로산후조리원	부산		○	○		
24	미즈산후조리원	광주					○

연 번	사업자명	지 역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출산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 실시 조항	휴대품 멸실사고 등 사업자 면책조항
25	김혜정산후조리원	대 구		○		○	
26	럭스엘리시아산후조리원	충 북		○		○	
27	광안자모산후조리원	부 산		○			○
28	다나산후조리원	충 북	○				○
29	연세산후조리원	세 종	○	○			○
30	리움 산후조리원	경 기	○			○	
31	와이즈산후조리원	경 기	○	○			○
32	더블유산후조리원	광 주	○			○	
33	유재산후조리원	경 기	○	○		○	○
34	좋은날에드라마산후조리원	부 산		○	○		○
35	미래여성산후조리원	부 산		○			○
36	웰(well)산후조리원	대 구	○			○	○
37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서 울		○			
38	꿈담산후조리원	대 구	○	○			○
39	참조은산후조리원	경 남	○	○			
40	한빛여성병원 산후조리원	경 기					○
41	본느마망산후조리원	대 구	○	○		○	○
42	초앤유산후조리원	경 기	○	○			○
43	르베르쏘산후조리원	서 울	○	○		○	
44	보람병원산후조리원	울 산	○			○	○
45	호산후조리원	강 원	○	○			○
46	지온산후조리원	대 구	○	○			○
47	우먼필산후조리원	경 기		○		○	○
48	라온산후조리원	대 전	○	○		○	○
49	제이에스산후조리원	경 기	○	○		○	○
50	삼성미래산후조리원	경 기				○	
51	동탄제일산후조리원	경 기	○	○		○	○
52	미래여성산후조리원	경 남		○		○	○

* 본 표의 사업자명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명칭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시정 전 · 후 약관 조항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 <u>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u> - <u>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 계약금 전액환급</u>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u>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u> - <u>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u> - <u>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u> - <u>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u>
◆ <u>서비스의 기본을 6박7일로 하며, 그 이전에 퇴실을 원할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u>	◆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한다.
◆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u>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를 배상합니다.</u>
◆ <u>본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불한다.</u>	◆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판단 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 <u>산후조리원 이용 중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에서 배상한다.</u>
♦ <u>공기로 감염되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등 "을"의 성실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불가항 력적으로 발생하는 "갑"의 질병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u>	♦ <u>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u> ♦ <u>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 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u>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 본인(남편 포함 본인과 관련된 모든자)은 본 조리원과 관련된 글을 특정 의도(유리한 합의의 목적 또는 그 외 목적 등)로 카페 등 SNS에 글을 공유하지 않는다. 어길시 본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u>< 삭제 ></u>
♦ <u>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u>	♦ <u>< 삭제 ></u>

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 실시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 분만 후 입실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병원 병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 산모의 동의하에 입실 대기기간 동안 병원의 병실에서 대기한다. ◆ <u>입실 대기기간 일수는 조리원 일수에서 차감되며, 결제비용은 조리원 비용에서 대기 비용 적용 후 차액을 입실료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u>
◆ 만실로 인하여 산모가 병원에서 며칠 대기하는 경우, <u>산후조리원이 해당 일수의 병실료를 지급하되 지급하는 병실료의 1일 한도는 40만원 입니다 (병실료 지급 시 입실 후 해당 일수를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에서 차감하되, 차감된 일수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음).</u>	◆ <u>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 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u> ◆ <u>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u>

⑤ 휴대품 멸실사고 등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전	시정 후
◆ 입실기간 중 본원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u>문제 발생시 책임은 산모(보호자)에게 있다.</u>	◆ <u>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u> ◆ <u>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u>
◆ <u>산후조리원 내에서 일어난 분실 및 도난 사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u> 객실을 비우는 경우 객실문을 꼭 잠가주시고 귀중품 및 현금을 객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u>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 등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업무시간 중 조리원 책임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평일 9시 ~ 18시, 책임자 : 조리원 실장 또는 부책임자), 보관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습니다.</u>